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1. 12. 30.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3일

○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 74회 정기회

○ 제6차 내무위원회 (1991. 12. 27) 상정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민방위국장 전석조)

가. 제안이유

- 소방법 개정공포(법률 제4,419호. 91.12.14)로 소방업무의 수행 책임이 국가(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되므로 도지사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 및 소방서 미 설치 지역의 관할 군수에게 위임코저함.

나. 주요골자

- 소방업무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 및 소방서 미 설치 지역의 관할군수에게 위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민귀식)

- 현재의 국가소방체제에 있어서는 시·군 소방서의 소방업무는 소방서에서, 지휘 감독은 당해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어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시·군)중심의 소방사무는 재해가 광역화, 대규모화됨에 따라 1개 시·군의 소방력으로는 대처하기가 곤란하므로 2개이상의 시·군단위 자치단체를 권역화하여 소방관서를 설치하므로서 인력, 장비,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형화재사 인근 타소방관서와 상호 응원체제가 용이하도록 지휘 감독체계를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일원화하는 것임.
- 그러므로 법률 제4,419호('91.12.14)로 개정공포한 소방법제3조,부칙제1조, 제2조에 근거하여 도지사의 권한 위임사무 52건은 소방관서가 설치된 시지역은 소방서장에게, 소방서 미 설치지역은 관할지역의 군수에게 권한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도의 원안대로 의결
(참석 7인, 찬성 7인)

7.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8. 기타필요한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첨부서류

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